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213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김민전 · 서천호 · 조경태
김상훈 · 조배숙 · 이인선
나경원 · 권성동 · 고동진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지역화폐·소비쿠폰 형태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시되는 경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재난·재해 대

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등은 예외로 함으로써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현금성지원사업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소비쿠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하 “현금성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새롭게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간 중 기존에 시행 중인 현금성지원사업의 지급대상 또는 지급규모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
3. 감염병 확산 또는 급격한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

4.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86조의2(현금성지원사업의 제 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 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소비쿠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하 “<u>현금성지원사업</u>”이라 한다) 을 새롭게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간 중 기존에 시행 중인 현금성지원사업의 지급대 상 또는 지급규모를 확대하여 서는 아니 된다.</u></p> <p><u>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u></p> <p><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사업</u></p> <p><u>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u></p> |

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

3. 감염병 확산 또는 급격한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

4.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사업